

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

◎ 공 사 명 : 예천남부초등학교 천장개체공사

◎ 위 치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길 17

- 1회차 -



경북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2671 / TEL:054-842-9954 / FAX:054-841-9958
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제 2016-120004호 E-mail : asd73020@naver.com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
제 출 인	상호(대표자)	(주)경수산업개발	사업자등록번호 137-81-39505
	주 소	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목은길 287 (전화번호: 054-734-0489)	
건 축 물	건물명	예천남부초등학교	위 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조동길 17
	연면적(㎡)	3,545.45	작업기간 2019년 7월 30일~2019년 8월 5일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㎡)·부피(㎡)] 402.43㎡		
측정기관	대표자 김 희 진	사업자등록번호 508-81-26065	
	주 소 경북 안동시 남선면 충효로 4147-25		
측정일시	2019년 07월 30일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
		별첨1.참조	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별첨2.참조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9 년 월 일

제출인

(주)경수산업개발



(인)

예천군수 귀하

석면비산 측정결과표

1. 작업장 개요

측정의뢰자 (석면해체·제거)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 : 예천남부초등학교 천장개체공사		
	현장 소재지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길 17		
	업자명(상호) : (주)경수산업개발		
	전 화 번 호 : 054-734-0489	대표자 : 전호열	

2. 측정기간 : 2019 년 07 월 30 일

3. 측정자(분석자 포함)

성 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 고
☐ 장 태 순	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	09201160694F	측정자
☒ 박 현 희	대기환경산업기사	92207170225M	측정자
☐ 김 희 진	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	12201160571Q	측정자
☒ 김 현 길	관련학과전공자	-	분석자

4. 측정결과

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ℓ/min)	측정농도(f/cc)	초과여부
별첨1.참조				

5. 측정 위치도(측정장소)

별첨2.3 참조

2019년 07월 31일

측정기관 : (주)지지석면연구소



별첨1. 측정결과

측정일자	2019년 07월 30일					
측정위치	측정시간 (min)	유량 (ℓ/min)	총유량 (ℓ)	섬유수 (fiber)	측정결과 (f/cc)	초과여부
#1 부지경계선	220	13.30	2926.0	9	0.002	노출기준미만
#2 부지경계선	220	13.45	2959.0	10	0.002	노출기준미만
#3 부지경계선	220	13.56	2983.2	11	0.002	노출기준미만
#4 부지경계선	220	13.34	2934.8	8	0.001	노출기준미만
#5 작업장주변(실외)	100	13.77	1377.0	8	0.003	노출기준미만
#6 위생설비입구	40	13.84	553.6	10	0.003	노출기준미만
#7 음압기배출구1	40	13.82	552.8	12	0.004	노출기준미만
#8 음압기배출구2	40	13.82	552.8	13	0.004	노출기준미만
#9 폐기물반출구	40	13.24	529.6	7	0.002	노출기준미만

-분석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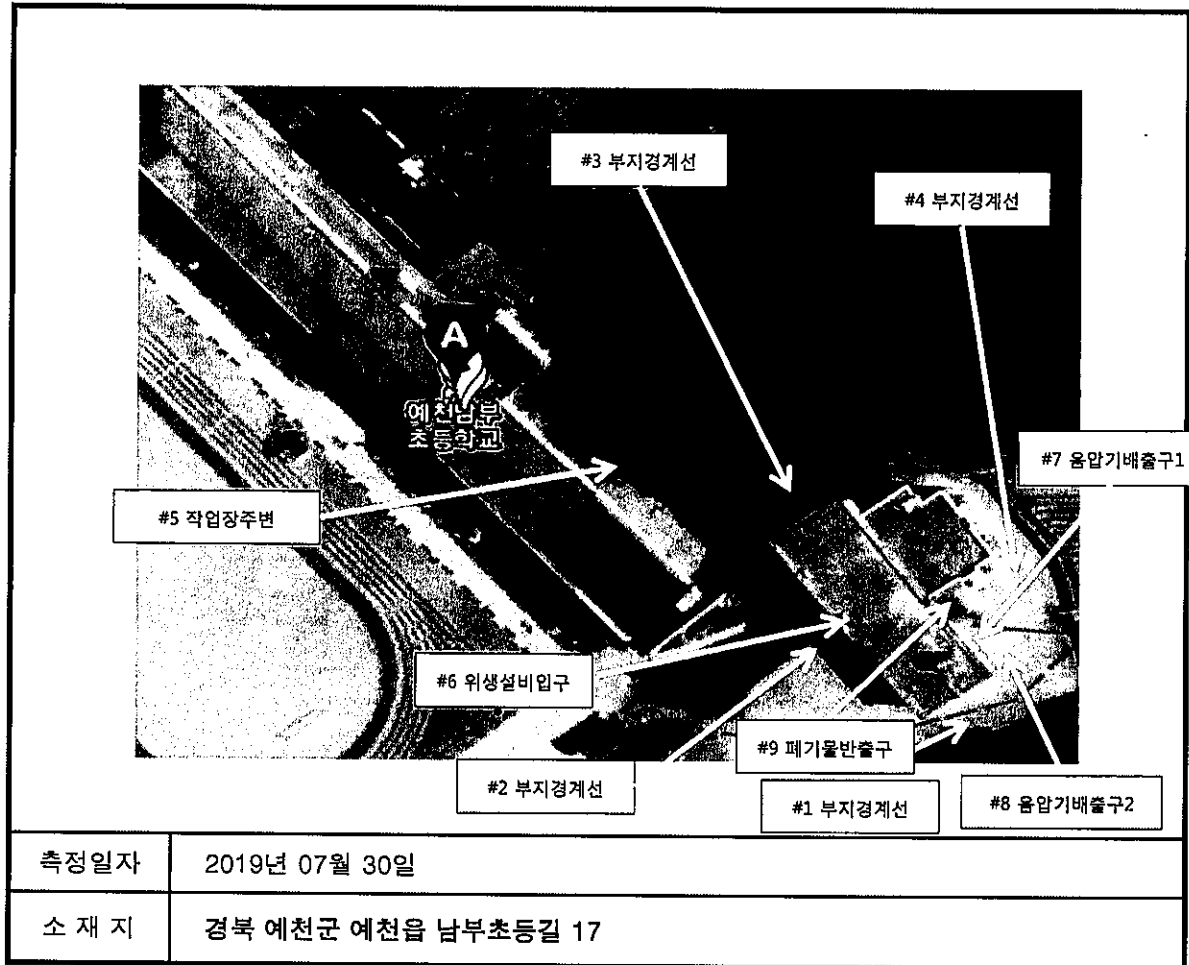
-노동부 노출기준 : 0.01 f/cc

-본 사는 노동부지정(제 2016-120004호) 석면조사분석기관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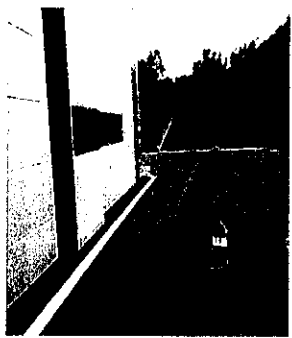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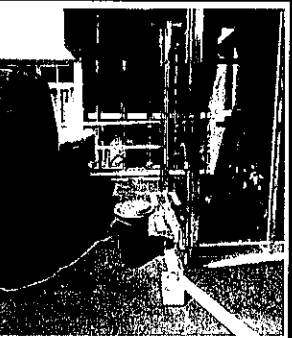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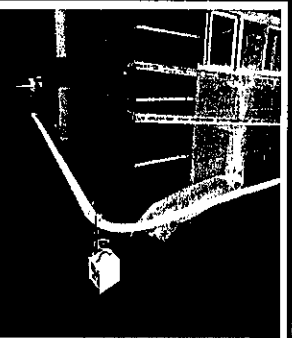
-본 분석결과서는 법적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, 본사의 허가없이 재발행 될 수 없습니다.

-시료는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, 30일 이내에 폐기처분 됩니다.

별첨2. 측정 위치도



별첨3. 측정지점사진<개별 석면해체 작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측정지점	부지경계선	측정지점	부지경계선
			
측정지점	위생설비입구,작업장주변	측정지점	음압기배출구1,2
			
측정지점	폐기물반출구	측정지점	-
			

■ 석면비산농도측정의 법적근거

제2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)

①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는 자(이하 "석면해체·제거업자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(이하 "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"이라 한다)을 지켜야 한다.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0.01개/cc를 말한다.

②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시행령] 제39조(소규모 건축물)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"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해체·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<7. 분무재 8. 내화파복재>)를 말한다.

[시행규칙] 제38조(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)

①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

1. 측정기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가.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

나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

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

2. 측정 자점: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

3. 측정 시기: 석면해체·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

②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

(시료채취 시기) ① 석면 해체·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장과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시료채취 지점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.

②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: 부지경계선, 위생설비, 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·외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, 사업부지내 거주자 주거지역(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주변에 한함)

2. 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체·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.

③ 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: 부지경계선, 위생설비, 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·외, 음압기, 폐기물 반출구

2. 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체·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.

(시료채취 유량) ① 부지경계선은 2,400L,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,200L를 기준으로 하되, 먼지의 영향 및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위생설비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.

(분석방법) ① 시험방법은 위상자현미경(PCM)법, 주사전자현미경(SEM)법, 투과전자현미경(TEM)법으로 한다.

② 위상자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의 전처리 및 분석은 「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」의 '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(ES 02303.1)'을 따르고 주사전자현미경법은 ISO 14966을 따른다.

환경부고시 제 2012-79호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관리를 위한 시료채취 지점

<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구분	지점		지점수	시료추정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	전수(1개 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. 높이 1.2-1.5m	-

<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구분	지점		지점수	시료추정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	전수(1개 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보관지점		전수(2개 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	폐기물 반출구	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. 높이 1.2-1.5m	-
	거주자 주거지역		2개소 이상	해체·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-3m, 높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신고서

이 책은 『조선의 정치』와 『조선의 사회』에 이어서 『조선의 문화』로 이어진다.

(와주)

[illegible][illegible]

장소 : 부산광역시



1992年12月

1-49 06 1457 157

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

◎ 공 사 명 : 예천남부초등학교 천장개체공사

◎ 위 치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길 17

- 2회차 -



경북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2671 / TEL:054-842-9954 / FAX:054-841-9958
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제 2016-120004호 E-mail : asd73020@naver.com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
제 출 인	상호(대표자)	(주)경수산업개발	사업자등록번호 137-81-39505
	주 소	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목은길 287 (전화번호: 054-734-0489)	
건 축 물	건물명	예천남부초등학교	위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담두조동길 17
	연면적(㎡)	3,545.45	작업기간 2019년 7월 30일~2019년 8월 5일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㎡)·부피(㎡)] 402.43㎡		
측정기관	대표자 김 희 진	사업자등록번호 508-81-26065	
	주 소 경북 안동시 남선면 충효로 4147-25		
측정일시	2019년 07월 31일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
		별첨1.참조	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별첨2.참조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9 년 월 일

제출인

(주)경수산업개발



예천군수 귀하

석면비산 측정결과표

1. 작업장 개요

측정의뢰자 (석면해체·제거)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 : 예천남부초등학교 천장개체공사
	현장 소재지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길 17
	업자명(상호) : (주)경수산업개발
	전화번호 : 054-734-0489
대표자 : 전호열	

2. 측정기간 : 2019 년 07 월 31 일

3. 측정자(분석자 포함)

성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☐ 장태순	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	09201160694F	측정자
☒ 박현희	대기환경산업기사	92207170225M	측정자
☐ 김희진	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	12201160571Q	측정자
☒ 김현길	관련학과전공자	-	분석자

4. 측정결과

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ℓ/min)	측정농도(f/cc)	초과여부
별첨1.참조				

5. 측정 위치도(측정장소)

별첨2.3 참조

2019년 08월 01일

측정기관 : (주)지지석면연구소



별첨1. 측정결과

측정일자	2019년 07월 31일					
측정위치	측정시간 (min)	유량 (ℓ/min)	총유량 (ℓ)	섬유수 (fiber)	측정결과 (f/cc)	초과여부
#1 부지경계선	220	13.48	2965.6	15	0.002	노출기준미만
#2 부지경계선	220	13.30	2926.0	11	0.002	노출기준미만
#3 부지경계선	220	13.56	2983.2	13	0.002	노출기준미만
#4 부지경계선	220	13.60	2992.0	14	0.002	노출기준미만
#5 작업장주변	100	13.21	1321.0	7	0.003	노출기준미만
#6 위생설비입구	40	13.41	536.4	9	0.003	노출기준미만
#7 음압기배출구1	40	13.29	531.6	6	0.002	노출기준미만
#8 음압기배출구2	40	13.06	522.4	10	0.003	노출기준미만
#9 폐기물반출구	40	13.23	529.2	9	0.003	노출기준미만

-분석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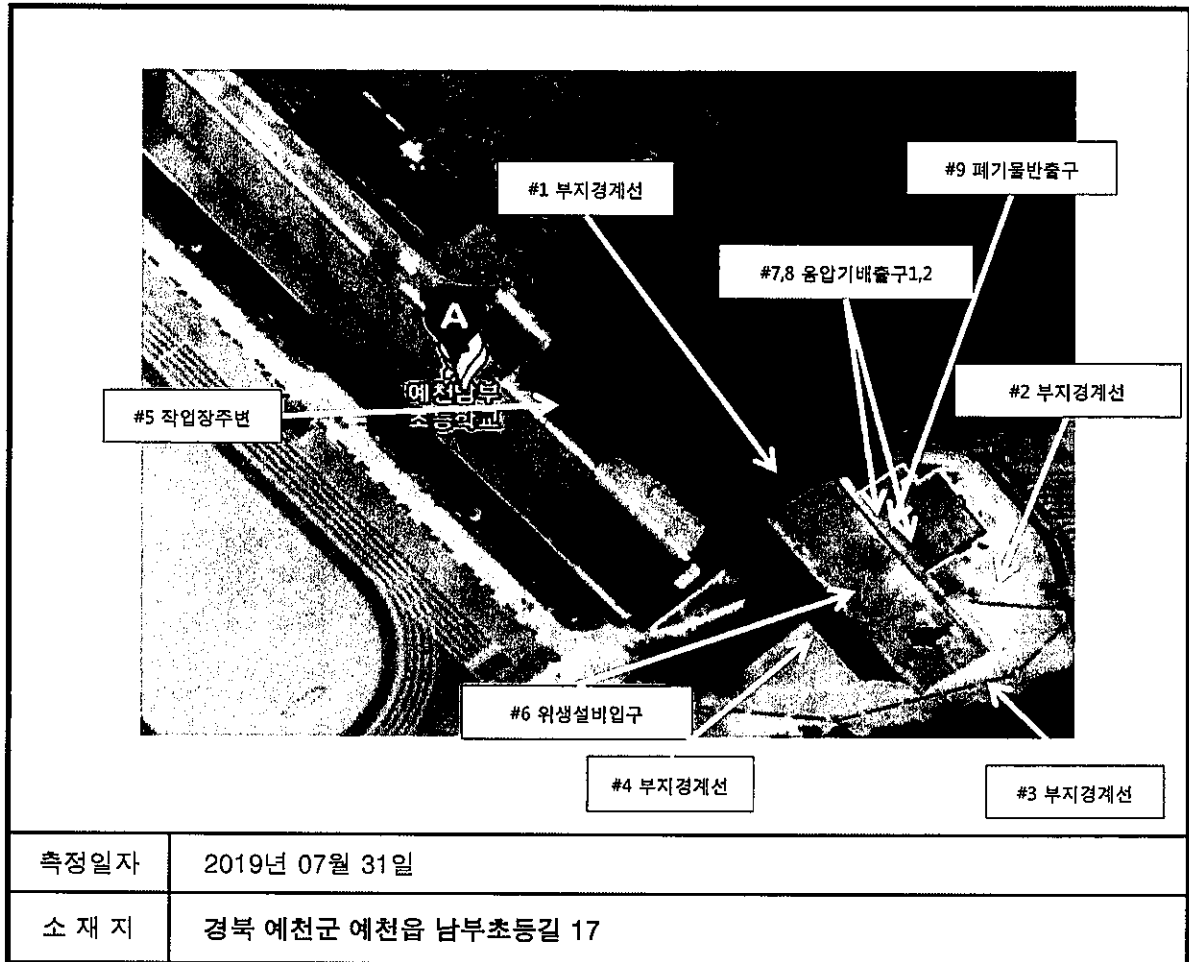
-노동부 노출기준 : 0.01 f/cc

-본 사는 노동부지정(제 2016-120004호) 석면조사분석기관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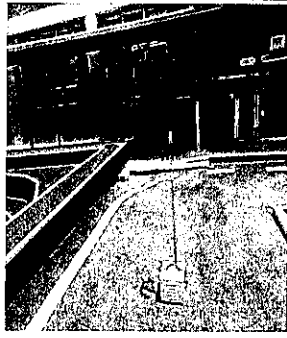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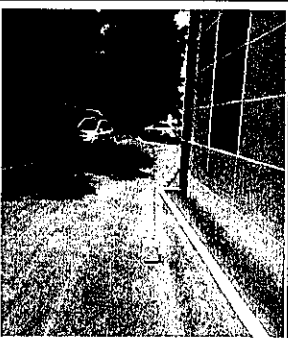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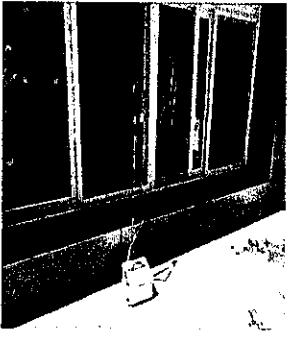
-본 분석결과서는 법적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, 본사의 허가없이 재발행 될 수 없습니다.

-시료는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, 30일 이내에 폐기처분 됩니다.

별첨2. 측정 위치도



별첨3. 측정지점사진<개별 석면해체 작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측정지점	부지경계선	측정지점	부지경계선
			
측정지점	작업장주변, 위생설비입구	측정지점	음압기배출구1,2
			
측정지점	폐기물반출구	측정지점	
			

■ 석면비산농도측정의 법적근거

제2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)

①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는 자(이하 "석면해체·제거업자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(이하 "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"이라 한다)을 지켜야 한다.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0.01개/cc를 말한다.

②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시행령]제39조(소규모 건축물)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"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해체·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<7. 분무재 8. 내화파복재>)를 말한다.

[시행규칙]제38조(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)

①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

1. 측정기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가.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

나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

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

2. 측정 지정: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정

3. 측정 시기: 석면해체·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

②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

(시료채취 시기)①석면 해체·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장과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축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시료채취 지정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.

②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축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: 부지경계선, 위생설비, 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·외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, 사업부지내 거주자 주거지역(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주변에 한함)

2. 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체·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.

③ 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: 부지경계선, 위생설비, 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·외, 음압기, 폐기물 반출구

2. 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체·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.

(시료채취 유량)①부지경계선은 2,400L,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,200L를 기준으로 하되, 먼지의 영향 및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위생설비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.

(분석방법)①시험방법은 위상자현미경(PCM)법, 주사전자현미경(SEM)법, 투과전자현미경(TEM)법으로 한다.

② 위상자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의 전처리 및 분석은 「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」의 '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(ES 02303.1)'을 따르고 주사전자현미경법은 ISO 14966을 따른다.

환경부고시 제 2012-79호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관리를 위한 시료채취 지점

<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구분	지점		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	전수(1개 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. 높이 1.2-1.5m	-

<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구분	지점		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	전수(1개 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보관지점		전수(2개 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. 높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	폐기물 반출구	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. 높이 1.2-1.5m	-
	거주자 주거지역		2개소 이상	해체·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-3m. 높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식면 해체·제거 작업 신고서

본 신고사항을 신고 작성함에 주시게 되라며 ()에는 사본을 씁니다.

(양식)

이전속담 [전 비]	위치(소재지)	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학교길 17		건축물등록번호	4780025025-1-00060000
	종로	교육연구사설(초등학교)		건물명(실비명)	남부초등학교
	건축물수	지상 2층		구조	철근콘크리트조
	시타수			면적	3,545.45㎡
소유자	성명	예천남부초등학교장		전화번호	054-654-2399
	주소	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학교길 17			
식면해체·제거업자	업자명(상호)	유정수산업개발		대표자성명	최호연
	고용노동부 등록번호	3227호			
	전화번호	054-734-0489	팩스번호	054-734-5657	
작업장	공사명	예천남부초등학교 원장기체공사		전화번호	054-734-0489
작업 기간	작업사유	예천남부초등학교 원장기체공사			
	작업기간	2019년 07월 27일 부터 2019년 08월 18일 까지			
식면 종류 및 면적 (단위)의 종류 및 면적	종류	면적(㎡) : 부피(㎥) : 길이(m)			
	콘크리트				
	타타리				
	천장	타스	348.00㎡		
	지붕	슬라이트	54.43㎡		
	간판				
	바닥				
	파이프라인				
	단열				
	기타				
상용화인자	성명	최호연		전화번호	010-3353-0489
	성명	김남길	주소	전화번호	
식면 종류 및 면적 (단위)의 종류 및 면적			면적(㎡)		

본 신고사항을 신고 작성함에 주시게 되라며 ()에는 사본을 씁니다.

2019년 7월 18일

신고인

유정수산업개발

054-734-0489

FAX : 054-734-5657



(서명 또는 인)

본 신고사항을 신고 작성함에 주시게 되라며 ()에는 사본을 씁니다.

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

◎ 공 사 명 : 예천남부초등학교 천장개체공사

◎ 위 치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길 17

- 3회차 -



경북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2671 / TEL:054-842-9954 / FAX:054-841-9958
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제 2016-120004호 E-mail : asd73020@naver.com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
제 출 인	상호(대표자)	(주)경수산업개발	사업자등록번호 137-81-39505
	주 소	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목은길 287 (전화번호: 054-734-0489)	
건 축 물	건물명	예천남부초등학교	위 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담무조동길 17
	연면적(㎡)	3,545.45	작업기간 2019년 7월 30일~2019년 8월 5일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㎡)·부피(㎡)] 402.43㎡		
측정기관	대표자 김 희 진	사업자등록번호 508-81-26065	
	주 소 경북 안동시 남선면 충효로 4147-25		
측정일시	2019년 08월 01일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
		별첨1.참조	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별첨2.참조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9 년 월 일

제출인

(주)경수산업개발



예천군수 귀하

석면비산 측정결과표

1. 작업장 개요

측정의뢰자 (석면해체·제거)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 : 예천남부초등학교 천장개체공사
	현장 소재지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길 17
	업자명(상호) : (주)경수산업개발
	전화번호 : 054-734-0489
대표자 : 전호열	

2. 측정기간 : 2019 년 08 월 01 일

3. 측정자(분석자 포함)

성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☐ 장태순	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	09201160694F	측정자
☒ 박현희	대기환경산업기사	92207170225M	측정자
☐ 김희진	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	12201160571Q	측정자
☒ 김현길	관련학과전공자	-	분석자

4. 측정결과

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f/cc)	초과여부
별첨1.참조				

5. 측정 위치도(측정장소)

별첨2.3 참조

2019년 08월 01일

측정기관 : (주)지지석면연구소



별첨1. 측정결과

측정일자	2019년 08월 01일					
측정위치	측정시간 (min)	유량 (ℓ /min)	총유량 (ℓ)	섬유수 (fiber)	측정결과 (f/cc)	초과여부
#1 부지경계선	120	13.37	1604.4	14	0.004	노출기준미만
#2 부지경계선	120	13.46	1615.2	15	0.005	노출기준미만
#3 부지경계선	120	13.21	1585.2	12	0.004	노출기준미만
#4 부지경계선	120	13.21	1585.2	10	0.003	노출기준미만
#5 위생설비입구	40	13.28	531.2	9	0.003	노출기준미만
#6 폐기물반출구	40	13.16	526.4	12	0.004	노출기준미만
#7 작업장주변	100	13.21	1321.0	8	0.003	노출기준미만
	석면철거 120분 으로 부지경계선 측정 120분 함					

-분석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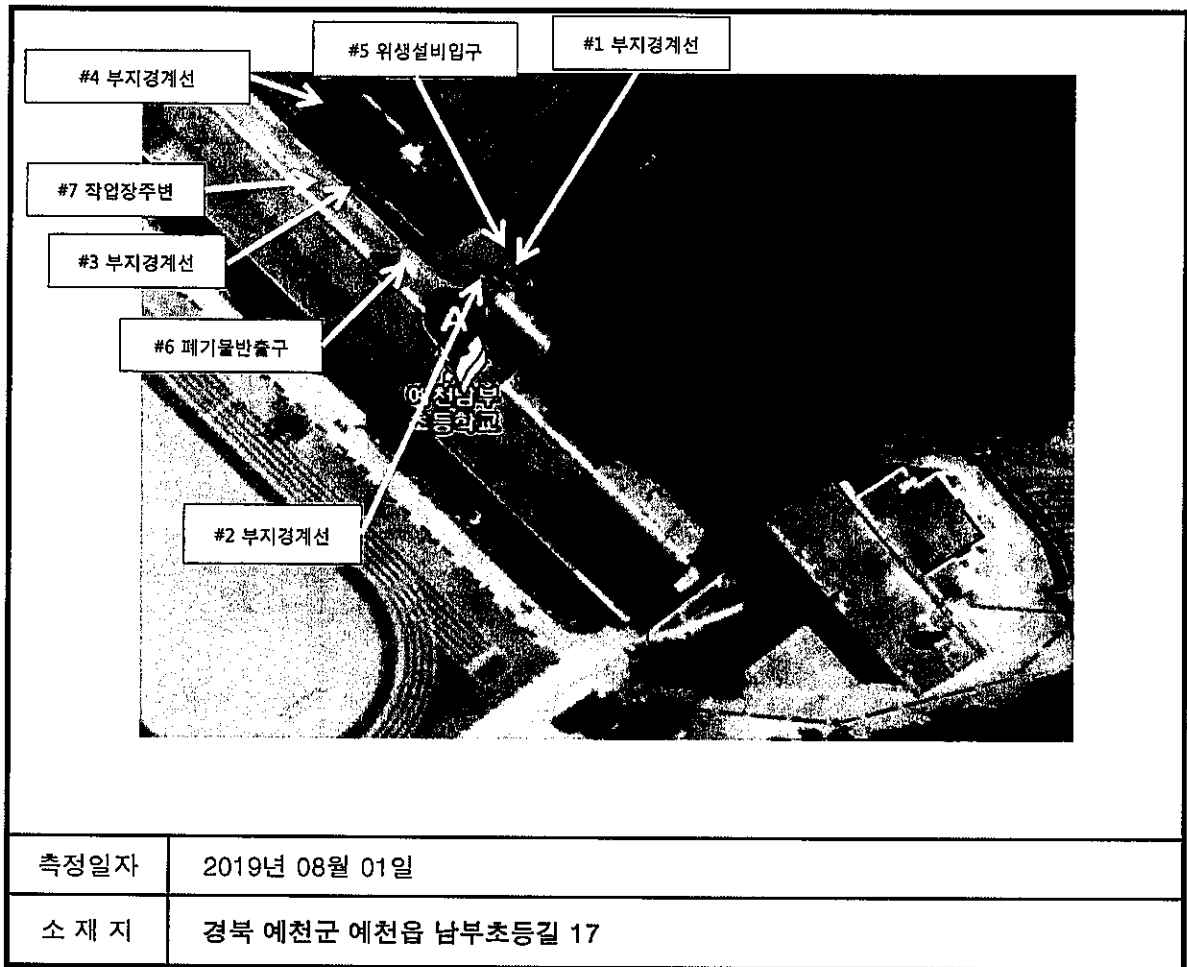
-노동부 노출기준 : 0.01 f/cc

-본 사는 노동부지정(제 2016-120004호) 석면조사분석기관입니다.

-본 분석결과서는 법적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, 본사의 허가없이 재발행 될 수 없습니다.

-시료는 별도의 정보가 없는 한, 30일 이내에 폐기처분 됩니다.

별첨2. 측정 위치도



별첨3. 측정지점사진<개별 석면해체 작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측정지점	부지경계선	측정지점	부지경계선
			
측정지점	위생설비입구,폐기물반출구	측정지점	작업장주변
			
측정지점	-	측정지점	-

■ 석면비산농도측정의 법적근거

제2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)

①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는 자(이하 "석면해체·제거업자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(이하 "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"이라 한다)을 지켜야 한다.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0.01개/cc를 말한다.

②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시행령] 제39조(소규모 건축물)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"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해체·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<7. 분무재 8. 내화피복재>)를 말한다.

[시행규칙] 제38조(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)

①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

1. 측정기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가.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

나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

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

2. 측정 지점: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

3. 측정 시기: 석면해체·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

②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

(시료채취 시기) ① 석면 해체·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장과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시료채취 지점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.

②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: 부지경계선, 위생설비, 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·외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, 사업부지내 거주자 주거지역(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주변에 한함)

2. 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체·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.

③ 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: 부지경계선, 위생설비, 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·외, 음압기, 폐기물 반출구

2. 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체·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.

(시료채취 유량) ① 부지경계선은 2,400L,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,200L를 기준으로 하되, 먼지의 영향 및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위생설비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.

(분석방법) ① 시험방법은 위상차현미경(PCM)법, 주사전자현미경(SEM)법, 투과전자현미경(TEM)법으로 한다.

② 위상차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의 전처리 및 분석은 「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」의 '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(ES 02303.1)'을 따르고 주사전자현미경법은 ISO 14966을 따른다.

환경부고시 제 2012-79호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관리를 위한 시료채취 지점

<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구분	지점		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	전수(1개 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 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 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 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

<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구분	지점		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	전수(1개 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 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 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 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보관지점		전수(2개 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 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	폐기물 반출구	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
	거주자 주거지역		2개소 이상	해체·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-3m, 높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신고서

본 신고서 작성 시 신고 대상인 석면 함유 건축물의 위치(주소)는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
(양식)

이전속담 []번	위치(소재지)	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학교길 17		건축물등록번호	4780025025-1-00080000
	용도	교육연구시설(초등학교)		건축명(실비명)	남부초등학교
	건축물수	지상 2층		구조	철근콘크리트조
	세대수			연면적	3,545.45㎡
소유자	성명	예천남부초등학교장		전화번호	054-654-2399
	주소	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학교길 17			
석면해체·제거업자	업자명(상호)	유경수산업개발		대표자 성명	최호연
	고용노동부 등록번호	3227호		팩스번호	054-734-5657
	전화번호	054-734-0489			
작업장	공사명	예천남부초등학교 천장기체공사		전화번호	054-734-0489
기간	시작일	2019년 07월 27일 부터			
	종료일	2019년 8월 18일 까지			
석면 함유 재료 (별첨)의 종류 및 양	종류	면적(㎡) : 부피(㎥) : 길이(m)			
	천장지	타스 348.00㎡			
	벽지	슬레이트 54.43㎡			
	문틀				
	바닥				
	파이프보온지				
	단열지				
	기타				
	기타				
	기타				
신고인	성명	최호연		전화번호	010-3353-0489
	성명	성년인인	주소	전화번호	

본 신고서 작성 시 신고 대상인 석면 함유 건축물의 위치(주소)는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
2019년 7월 18일

최호연

유경수산업개발

054-734-0489

FAX : 054-734-5657



(서명 또는 인)

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

◎ 공 사 명 : 예천남부초등학교 천장개체공사

◎ 위 치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길 17

- 4회차 -



GG석면연구소

경북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2671 / TEL:054-842-9954 / FAX:054-841-9958

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제 2016-120004호 E-mail : asd73020@naver.com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
제 출 인	상호(대표자)	(주)경수산업개발	사업자등록번호 137-81-39505
	주 소	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목은길 287 (전화번호: 054-734-0489)	
건 축 물	건물명	예천남부초등학교	위치 경북 예천군 예전읍 남부초등학교길 17
	연면적(㎡)	3,545.45	작업기간 2019년 7월 30일~2019년 8월 5일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㎡)·부피(㎡)] 402.43㎡		
측정기관	대표자 김 희 진	사업자등록번호 508-81-26065	
	주 소 경북 안동시 남선면 충효로 4147-25		
측정일시	2019년 08월 05일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
		별첨1.참조	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별첨2.참조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9 년 월 일

제출인

(주)경수산업개발



예천군수 귀하

석면비산 측정결과표

1. 작업장 개요

측정의뢰자 (석면해체·제거)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 : 예천남부초등학교 천장개체공사 현장 소재지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길 17 업자명(상호) : (주)경수산업개발 전 화 번 호 : 054-734-0489	대표자 : 전호열
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2. 측정기간 : 2019 년 08 월 05 일

3. 측정자(분석자 포함)

성 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 고
☐ 장 태 순	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	09201160694F	측정자
☒ 박 현 희	대기환경산업기사	92207170225M	측정자
☐ 김 희 진	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	12201160571Q	측정자
☒ 김 현 길	관련학과전공자	-	분석자

4. 측정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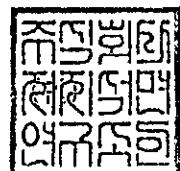
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ℓ/min)	측정농도(f/cc)	초과여부
별첨1.참조				

5. 측정 위치도(측정장소)

별첨2.3 참조

2019년 08월 05일

측정기관 : (주)지지석면연구소



별첨1. 측정결과

측정일자	2019년 08월 05일					
측정위치	측정시간 (min)	유량 (ℓ/min)	총유량 (ℓ)	섬유수 (fiber)	측정결과 (f/cc)	초과여부
#1 폐기물보관지점	35	14.27	499.5	7	0.002	노출기준미만
#2 폐기물보관지점	35	14.15	495.3	9	0.003	노출기준미만
#3 폐기물반출구	35	14.26	499.1	10	0.003	노출기준미만

-분석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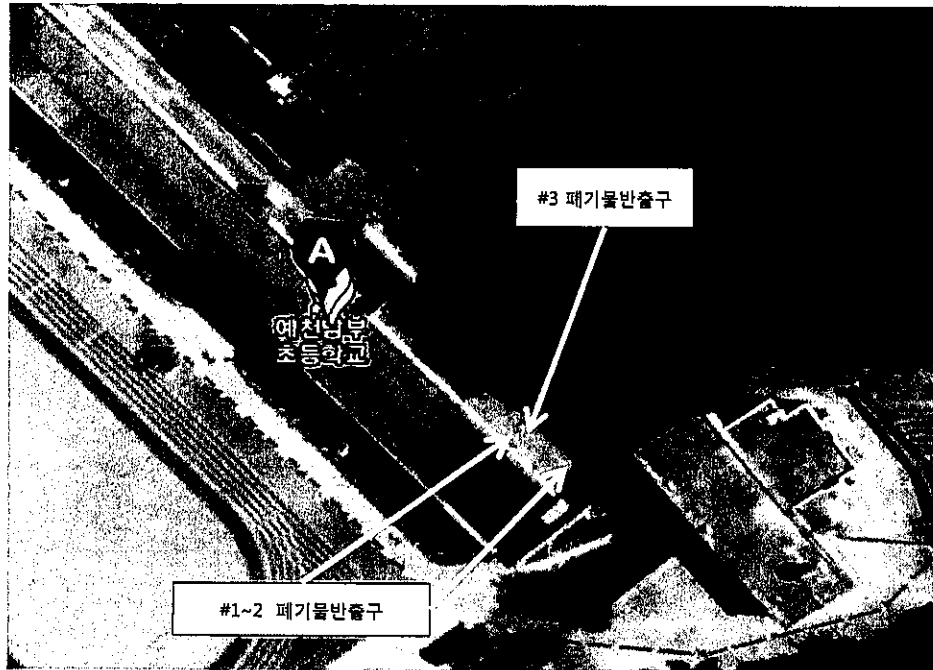
-노동부 노출기준 : 0.01 f/cc

-본 사는 노동부지정(제 2016-120004호) 석면조사분석기관입니다.

-본 분석결과서는 법적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, 본사의 허가없이 재발행 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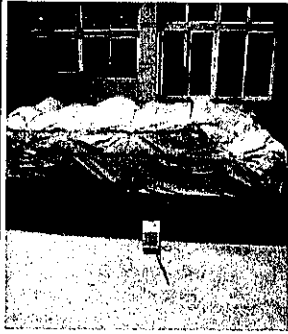
-시료는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, 30일 이내에 폐기처분 됩니다.

별첨2. 측정 위치도



측정일자	2019년 08월 05일
소재지	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길 17

별첨3. 측정지점사진<개별 석면해체 작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측정지점	보관지점	측정지점	폐기물반출구
			
측정지점	-	측정지점	-
측정지점	-	측정지점	-

■ 석면비산농도측정의 법적근거

제2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)

①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는 자(이하 "석면해체·제거업자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(이하 "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"이라 한다)을 지켜야 한다.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0.01개/cc를 말한다.

②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시행령]제39조(소규모 건축물)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"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해체·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<7. 분무재 8. 내화파복재>)를 말한다.

[시행규칙]제38조(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)

①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

1. 측정기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가.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

나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

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

2. 측정 지점: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

3. 측정 시기: 석면해체·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

②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

(시료채취 시기)①석면 해체·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장과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시료채취 지점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.

②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: 부지경계선, 위생설비, 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·외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, 사업부지내 거주자 주거지역(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주변에 한함)

2. 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체·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.

③ 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: 부지경계선, 위생설비, 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·외, 음압기, 폐기물 반출구

2. 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체·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.

(시료채취 유량)①부지경계선은 2,400L,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,200L를 기준으로 하되, 먼지의 영향 및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위생설비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.

(분석방법)①시험방법은 위상자현미경(PCM)법, 주사전자현미경(SEM)법, 투과전자현미경(TEM)법으로 한다.

② 위상자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의 전처리 및 분석은 「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」의 '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(ES 02303.1)'을 따르고 주사전자현미경법은 ISO 14966을 따른다.

환경부고시 제 2012-79호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관리를 위한 시료채취 지점

<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구분	지점	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	전수(1개 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. 높이 1.2-1.5m	-

<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>

구분	지점	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	전수(1개 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	전수(1개 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보관지점		전수(2개 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. 1m이내. 높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	폐기물 반출구		전수(1개 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. 높이 1.2-1.5m	-
	거주자 주거지역		2개소 이상	해체·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앞 2-3m. 높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신고서

본 신고사항을 양해각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이름은 사본으로 합니다.)

(2/3)

이전숙업 []번 비	위치(소재지)	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학교길 17	건축물등록번호	4780025025-1-00060000
	용도	교육연구시설(초등학교)	집단명(설비명)	남부초등학교
	건축물수	제상 2층	구조	철근콘크리트조
	세대수		면적	3,545.45 ㎡

소유자	성명	예천남부초등학교장	전화번호	054-654-2399
	주소	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길 17		

석면해체·제거업자	업자명(상호)	남경수산업개발	대표자성명	전호연
	고용노동부 등록번호	3227호		
	전화번호	054-734-0489	팩스번호	054-734-6657

작업종	공사명	예천남부초등학교 신장기공사	전화번호	054-734-0489
-----	-----	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작업 사유	해체사유	예천남부초등학교 신장기공사
	해체기간	2019년 07월 27일 부터 2019년 08월 18일 까지

석면 함유 자재 (종류)의 종류 및 면적	종류	면적(㎡) : 부피(㎥) : 길이(m)
	콘크리트	
	타일	
	철강재	철근 348.00 ㎡
	자갈	슬라이트 54.43 ㎡
	단열재	
	비닐	
	파이프(연속)	
	단열재	
	기타 (기타 : 기타 등등)	

작업장소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	성명	전호연	전화번호	010-3353-0489
	성명	성명	주소	주소
	성명	성명	성명	성명
	성명	성명	성명	성명

본 신고사항을 양해각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이름은 사본으로 합니다.)

2019년 07월 18일

전호연

남경수산업개발

054-734-0489



FAX : 054-734-6657